에 참가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자신이 세일즈맨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의견을 함께 하고자 하는 교정실무가로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ACM이 범세계적으로 28,000명의 수형자에게 수용실비를 제공하고 40개 이상의 교정센타를 관리하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왜이컨헛(Wakenhutt) 회사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이 숫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총 수형자를 합친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회사는 호주에서만 약 2,000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면서 3개의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ACM, GROUP FOUR 및 CCA 등 3개회사는 호주 수형자 중 약 20%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ACM의 대변인은 자신의 회사가 중구금 수준의 수형자 610명을 관리하고 있는 퀸랜드의 아더 고리 센타(Arthur Gorrie Center)에서 1992년 개청과 함께 호주에서 첫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수용자의 대부분은 재구류자 또는 최근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었다. 1994년에 이 회사는 사우스 웨일즈 주에 쥬니교도소(Junee Prison)를 개청하였는데 그 곳에서 600명의 수형자를 위한 中 및 輕拘禁 시설을 제공하였고, 보다 최근에는 600명의 中 및 輕拘禁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빅토리아 주에 있는 훌함교도소(Fulham Prison)를 1997년에 개청하였다고 한다. 그는 모든 ACM 시설에서는 폭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마약치료 및 성범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Group Four Company

두 번째는 Group Four Security Company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 설립되었다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 회사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가지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하며 그 운영은 40개국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Group Four 회사가 수형자 호송의 계약을 맺고 교도소 업무를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민간교도소를 위한 최근 계약의 대부분은 디자인, 건설, 재정 및 관리기능(DCFM)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계약은 시설에 관해서는 20년간 계속되고, 관리기능은 처음에는 5년, 그 후에는 매 3년마다 갱신된다. 두개의 민간교도소 즉, 하나는 빅토리아 주에, 또 다른 하나는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주에 있는 이들 교도소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Group Four회사는 호주에 있는 두개의 주에서 수형자의 호송책임에 대한 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Group Four 회사 대변인은 교도소의 민영화는 미국, 영국, 호주에서 이루어졌고 그들 나라 모두가 Anglo - Celtic English를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임을 주지시켰다. 그는 현재 세 민간회사가 모두 남아프리카에서 계약을 위한 입찰에 응하고 있으나 교도소를 자신들이 속한 문화권의 소우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발전된 교도소의 민영화모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적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다) 호주교정회사(Corrections Corporation of Australia)

민간교정회사를 대표하는 세 번째 설명자는 호주교정회사(CCM)에서 왔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42,000명의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범세계적으로 성인 및 청소년수형자를 위한 50개 시설 이상을 관리하며 미국교정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호주교정회사는 1990년도에 개청된 호주의 퀸랜드주 보라론에서 처음 민간교도소를 계약하였고, 輕拘禁 수준의 수형자 480명을 위한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계약은 단지 시설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뒤에 빅토리아주 여자교도소를 위한 계약은 완전한 DCFM(디자인, 건설, 재정 및 관리기능)모델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교도소는 1996년도에 개청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빅토리아주 여자교도소에서는 그 외 대부분의 시설에서 발견되는 의료모델과는 대조되는 사회보건의료모델과 같은 몇 가지 창의적인 방안의 개발이 가능했다고 하였다.

(2)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감독

호주의 빅토리아 주 교정국장은 그 주에서 3개 민간교도소에 대한 계약체결을 승낙하는 감독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정책의 입안, 기준의 설정, 업무의 감독 등에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계약승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쟁은 전 교정분야에 걸쳐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빅토리아주 교정국장은 자신의 직무가 4개로 나뉘어진 교

정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3개는 민간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조직이다. 그의 직무는 정부의 대표로서 여러 공급자에게 수형자를 할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어느 시설에 어떤 수형자를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편파주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는 민간교도소 관리를 위한 계약이 거실 밖의 생활, 교육의 수준과 질, 마약 테스트의 빈도와 결과, 묵인될 수 있는 武力의 정도, 작업시간 등과 같은 여러 교정실무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업무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모두 그들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3)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

홍콩 대표는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자신의 견해로는 교도소의 민영화는 범법자의 처벌 및 교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도소의 민영화가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계약자들은 수형자의 석방에 대해 몇 가지 압력을 가함으로써 더욱 다루기 어려운 수형자는 공공분야에서 취급하도록 남겨두게 될 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하였다. 또한 민간교도소의 개념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므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가 민간회사의 기본 목적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안전과 범법자를 교화하는 정부의 목적과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간 교도소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은 감시비용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민간교도소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영국 및 미국의 몇몇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그는 교도소 업무가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것보다 그 비용 면에서 약간 높다고 할지라도 교정업무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지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하여 빅토리아 대표는 미국보고서의 증거에 반박을 가했다. 그는 어느 누가 실제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정부는 수형자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처음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충"이란 호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설과 시설사이의 수형자의 모든 움직임이 민간 운영자가 아닌 정부 주도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계약에서 자신이 업무를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파산을 포함한 계약 비승인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4)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 교도소의 영향

빅토리아 대표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회사들도 민영화의 도입이 양측의 업무수행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

였다. 어느 정도 교도소 민영화가 추진되었거나 또는 그 조짐이 있었던 지역 내에서 공공교도소의 비용이나 업무의 수준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쟁의 결과로서 향상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양쪽 모두 상위직 직원들 간에 상당한 정도로 상호교환이 있었다. 상위 관리자들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동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특별한 경우를 인용하고 있다. 하위직에서는 다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적 교류는 유익한 면이 있으며,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곳에서 과거의 나쁜 관습이 되풀이되지 않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새롭고 경험 있는 교도관을 혼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라. 제4의제 : 교정직원 - 채용, 훈련 및 직무개발

홍콩, 솔로몬제도, 중국, 태국 및 필리핀이 이 주제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민간분야 대표로서 Crown Agents로부터의 간단한 언급이 있은 후 열띤 토의에 들어갔다.

(1) 교정직원의 채용

전 지역을 통해 자질이 있고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이고, 승진이나 직무개발과 같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훌륭한 직원들이 계속 남아 헌신적으로 교정업무에 투신할 것이라는 것이 재인식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의 채용이나 교육이 최근 몇 년사이에 일어난 정책이나 실무에 있어서의 변화에 정확히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캐나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신규직원 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은 지난 20년 동안 군사적이고 보안 지향적인 과정에서 더욱 인간위주의 기술을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왔다.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관료나 관리자를 인간행동, 동기, 성장 및 발전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아 왔다." 또한 태국 대표도 보안위주에서 인간 교화의 책임성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일반적인 과정 및 기준

(가) 신체적 조건

만일 이 문제가 대부분 교도소 시스템이 군사노선에 따라 운영되던 시기인 20년전에 제기되었다면 바람직한 육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의 요점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교정직원은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대표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그들의 육체적인 특성보단 잠재적인 교정직원으로서의 인간적인 자질과 관련된 것이다.

(나) 기준

지역내 모든 나라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입각한 직원채용 방법을 개발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대표의 보고는 의미있다 하겠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채용방법을 철저하게 재구성하였

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교정업무에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는 교정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지원자를 배제시킬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다른 나라 대표는 객관적인 선발기준, 공정한 면담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 교육수준, 인간관계 및 기타 자질

모든 나라는 훌륭한 학력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32%의 직원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8%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호주에서는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합당한 성적과 함께 12년간의 교육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의 학력을 요구한다. 홍콩에서는 1996년도에 간부급으로 임명된 35명 중 95%가 학위 또는 사회사업 및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도관의 학력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그것은 교도관이란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력이란 자격증은 기껏해야 시작에 불과하고 태도나 인간성 또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한 요인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홍콩대표는 교도관이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엄격한 규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 여자교도관의 채용

여자교도관을 보다 많이 채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치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교도관 중 약 25%

가 여자라고 한다. 호주 관할권 내의 대부분 지역에서 여자 교도관의 채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 교도소에서, 남자가 여자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캐나다에서의 여자교도관의 증가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 몇몇 남자 수용자들이 여자 교도관의 역할에 대해 불평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동등이란 입장에서 교도관의 권리는 수용자의 우려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 필리핀에서 여자교도관들은 남자교도소 내부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문객의 검색이나 통용문 근무 등과 같은 여러 업무에 점차 여자교도관을 배치하고 있다.

(3) 훈련 및 직무개발

대부분의 보고서는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주된 테마와 논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군사적 모델에서 교화모델로의 전환

뉴질랜드 대표는 뉴질랜드가 군사적 관리구조에서 현대적인 관리구조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교육이나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좀더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였다. 그는 특히 낡은 계급체계를 대체할 적정한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군사적 모델에서 보다 교화적인 모델로의 변화는 직원들이 폭 넓은 범위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프

로그램이 보다 많은 경비를 요하게 한다. 뉴질랜드 대표는 현재 교정예산 중 약 1%만이 교육 및 직무개발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는 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내용은 폭 넓게 다양하다. 기본 교육은 필리핀, 뉴질랜드에서 30일간이고, 피지와 중국에서는 약 3개월이다. 홍콩에서는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서 22주 또는 26주간이다.

또한 폭 넓은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훈련은 이미 교도관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만 이것에 전문 지식분야를 확대시키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교육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다. 먼저, 수형자의 소요의 진압, 난동저지 그리고 마약퇴치 등과 같은 교도소 관리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교육이다. 싱가폴 대표는 이와 같은 전문분야 훈련에 있어서의 자신들이 이룬 기술축적을 지역내 여러 나라에 알려주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인성개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와 민간교도소 운영자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의 특징은 행형학, 교정행정, 인력관리 등과 같은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내 일부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도관에게 컴퓨터의 기본 교육을 가르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 직무개발 프로그램의 교육기관(내부 또는 외부기관)

교정국 자체의 내부 교육기관에서 적어도 기본 직무교육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예가 솔로몬제도로서 그 곳에서는 교도소 업무가 경찰과 분리되자마자 자체 교도관 교육시설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 및 직무개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내부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 그리고 특수대학 등과 같은 외부 훈련원에 참가하는 직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흥미를 끌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관할권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교정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8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자체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호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교적 소규모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는 대규모의 내부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 맞지 않는 반면, 뉴 사우스 웨일즈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부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높은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다고 하며 이러한 경쟁은 1998년도에도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마련하면서 두 대학(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nd Charles Sturt University) 사이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과정은 단기간 또는 원격 교육에 의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라 한다. 또한 한국,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 그리고 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외연수와 외국

교정시설의 참관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지역훈련 프로그램

솔로몬제도 대표는 자국 정부가 1987년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된 제7차 아·태회의에서 중간관리자 훈련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바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말레이지아, 호주 등에서 그것이 가장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는 특별히 전 말레이지아 교정국장(Dato Ibrahim Bin Haji Mohamed)에게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중간급 교관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라고 말하였다. 이 제안은 중간 관리자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특히 소규모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의장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말레이지아의 지원을 언급하였다. 그는 회의가 지지한다면 자국 정부에 대해 카장에 있는 교정본부에서 지역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이 제안은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폴 그리고 홍콩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5) 결 론

직원의 채용, 교육 및 자질향상 등과 관련하여 지역내 교정국이 봉착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교정직원이나 교정행정에 대한 복합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의 개발이다. 교정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자원의 공유나 지역

적 협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카장에 지역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소 제안은 가장 중요한 발의임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4. 끝맺는 말

지금까지 제17차 아·태교정국장회의의 토의의제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태교정국장회의는 지역내 국가간에 상호 협력을 통한 균형있는 교정발전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특수한 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지역내의 교정국장들이 매년 한번씩 회동하여 교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정기법의 공동개발을 통해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교정의 현안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의 개최 경험이 있는 많은 회원국이 다음 회의의 개최를 위해 맹렬히 노력하고 있는바, 1998년 제18차 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1999년 제19차 회의는 중국에서, 그리고 2000년 제20차 회의는 필리핀에서 개최를 신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도에 이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역대 교정국장님들의 회의참가를 통하여 아·태 지역 내에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예측되는 두번째 우리나라에서의 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그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귀국보고에 대신 하고자 한다.

19733052

矯正資料

교정과정(1997. 7)

獨逸 헷센州의 矯正制度(1)

金 丙 柱
(京畿大 講師, 法學博士)

〈目 次〉

Ⅰ. 머릿말
Ⅱ. 矯正處遇에 대한 法的根據
Ⅲ. 矯正施設
Ⅳ. 矯正人力
Ⅴ. 矯正費用
Ⅵ. 收容現況
Ⅶ. 開放處遇
Ⅷ. 矯正緩和 및 休暇制度
Ⅸ. 學科 및 職業敎育
Ⅹ. 矯導作業
Ⅺ. 特殊處遇
Ⅻ. 自由時間, 體育, 文化活動

編譯者 註) 이 글은 1995년 헷센주 법무성이 헷센주 교정의 대강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소책자형태로 발간한 "Justizvollzug in Hessen - Informationen und Zahlen, 1995"의 내용중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독일은 국가형태가 연방공화국으로서 교정업무는 주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교정의 근거법규로는 연방법인 행형법(Gesetz un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esntziehenden Ma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1976)이 있지만, 그 집행은 각 주마다의

Ⅰ. 머릿말

오래전부터 교정과 형사사법제도는 여론의 초점이 되어왔다. 가정과 각종 모임, 친구지간 나아가 선술집에서까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주제를 정치권과 사회단체 그리고 교회가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정치인과 대중매체는 대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주 부분적인 것만을 거론한다. 여론은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부분들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 경찰은 도대체 범인을 너무 느슨하게 다룬다.
- 경찰에 체포된 범죄인을 진보적이라는 판사들은 아무 생각없이 다시 방면한다.
- 어떻게 자유형이라도 선고받은 수형자들은 너무 일찍 휴가를 받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도 개방시설로 이송되며 심지어는 조기에 석방된다.
- 철창속에 지내는 동안에도 그동안 상당히 개선된 수용생활, 양질 고가의 작업장과 직업훈련자리, 그리고 끝내주는 여가시간과 스포츠활동 등 이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호텔감옥생활을 한다.

고유한 특성과 법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정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탐구를 위해서는 연방법인 행형법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 실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6개에 달하는 주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독일 교정실무를 개관하는 작업의 첫번째 시도로서 여기서는 헷센주의것을 소개한다. 그동안 우리 교정계는 이론 및 실무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모델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우리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제3의 대안으로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정시설내에서는 안전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 스위스치즈처럼 도처에 구멍투성이이다.

불법에 대한 응보라는 자유형의 목적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행형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다 된 지금에도 여전히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교정목표는 수형자가 장차 사회적 책임하에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생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행형법 제2조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형생활은 일반 사회생활과 가능한 한 근접한 것이어야 한다(행형법 제3조 제1항).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국가원칙은 개인적인 약점이나 책임, 무능력이나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인격적 사회적 성장에 장애를 받고 있는 사회집단에도 국가적 보호와 원조가 요구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 집단에는 그들의 재사회화 자체가 공동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수형자들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사회야말로 행위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재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존엄이 중심이 되고 사회국가원칙에 의무지워진 공동체의 헌법적 자명성에 귀결된다.

국가는 안전과 법질서유지를 위하여 가벌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유박탈기간동안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되는 시민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침해목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가지고 수형자와 그 가족의 법률관계 및 생활관계에 개입한다. 행형법에 규정된 재사회화목표로부터 수형자는 단지 구금될 수만은 없

는 존재라는 사실이 도출된다. 따라서 교정은 수형자에게 범죄적 과거를 해소하고, 그의 사회적 결함을 제거하며, 나중에 석방된 뒤 그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를 지향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교정은 수형자를 부자유스럽게 하면서 자유를 준비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교정은 자유박탈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교정에 있어서 교정목표라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가능한 조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배려는 어떤 수형자가 재사회화의지를 보여준다거나 재사회화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박탈 기간동안에 인간적인 감금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은 또 다른 범행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균형잡힌 노력이 필요하다.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안관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재사회화사상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따라서 헷센주의 모든 교정시설은 다단계의 보안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형자들은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게 분류 이송된다. 그러나 교정에 있어서 보안은 쇠창살이나 높은 담장 같은 건축과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담장안에서의 평화적인 상호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

신의 업무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다정다감함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교정직원들이야말로 수형자의 처우와 보호를 위해 제공된 다양한 프로그램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조건을 수용하는 수형자는 이를 부당하고 체면깎이는 것으로 느끼는 수형자에 비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 헷센주의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합적 교정계획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형자와 함께 실행하고,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계하여 처우한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위험한 수형자라 할지라도 보안구역이 아닌 통상적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데, 이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처우지향적인 교정이 설사 체계적으로 조긴지워진 보안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는 억압적 보안정책의 부담스러운 결과와는 비교될 수 없다.

최근 헷센주의 교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행형법시행 이후 교정인력 수준은 5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특히 특수전문직, 사회사업가, 심리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일반교정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낡은 건물은 현대적인 주거그룹교정에 적합한 시설로 개축 또는 신축, 교체되었다. 학과 및 직업교육기회 그리고 자유시간활동도 신장되었다. 시설의 조직구조도 변경되어 사회치료적 처우설비도 갖추이졌다. 끝으로 주목할만한 교정개방은 개방교도소의 증설, 휴가와 외출, 외부통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통한 교정에의 강화된 민간

참여를 통해서도 실현되고 있다.

최근 정치적 변혁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를 통하여 행형에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수형자의 혼거수용으로 양적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수용인원이 현저히 증가했고 특히 미결구금과 도시지역이 두드러진다. 언어문제가 초래되는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많은 약물사범과 폭력적인 재소자의 증가는 교도직원의 업무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 그러면서도 장차 행형법상의 교정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정조직구조와 처우내용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헷센주정부는 1993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여 다양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권고안과 개별교도소의 독자적인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헷센주법무부(Das Hessische Ministerium der Justiz und fur Europaangelegenheiten, 헷센주법무부는 그 명칭에 보듯이 유럽관련업무도 함께 관장한다)는 교정정책추진방향을 입안하였다. 그 내용은 항을 달리하여 요약 소개한다.

사람을 가두는 것이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물론 위험하고 문제 있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 오늘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단지 5~6%만 구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회는 이들 구금된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진다. 판사의 선고에 따라 일정시간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설사 이들이

재범한다 하더라도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 있는 형사 및 교정정책을 위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간협력을 필요로 한다. 관심과 능력이 있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자문위원회와 자원봉사요원들은 민간사회복지단체, 스포츠클럽, 교회기간 등과 같이 관심 있는 시민들과 교정당국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헷센州 矯正政策推進方向≫

헷센주의 교정은 입법자가 위임한 바와 같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동시에 재범으로부터 공공일반을 보호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수형자의 재사회화는 인도적인 수용과 자질 있는 직원에 의한 계획적인 보호와 처우를 전제로 한다. 석방은 단계적으로 모든 개별적인 교정완화조치를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교도소의 외적인 보안은 시설건축, 기계설비 그리고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된다. 교정목표의 변경을 위한 조건에 대하여는 끊임 없이 그 효과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헷센주의 교정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결구금자의 격증, 폭력범, 외국인, 약물사범의 증가가 당면한 교정실무의 단면을 대변한다. 이러한 현실 그리고 1993년 발족한 전문가위원회가 헷센주 교정의 계획 및 건축상의 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안에서 제안한 사실을 기초로 본 교정정책추진방향이 마련되었다.

가. 矯正組織의 改編

(1) 矯正施設의 區分

미래지향적인 교정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은 선고된 자유박탈의 종류, 성별, 연령 그리고 특별한 처우, 보호, 촉진 또는 보안의 필요에 따라 수형자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a) 閉鎖施設(未決拘禁包含)

보안의 관점에서 폐쇄시설을 고도의 시설내외의 보안체계(예컨대 집중전자감시, 경보체계, 감시탑)를 유지하는 보안1급시설과 보다 유연한 건축 및 기술적 보안체제를 유지하는 보안2급으로 분류하는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은 계속유지된다. 보안등급에 따른 처우는 각각 분리된 시설에 집행된다.

b) 開放施設

행형법의 입법의도에 따라 통상적인 시설은 개방시설이어야 한다(행형법 제10조). 이 규정은 교도소생활이 가능한 한 일반 사회생활과 유사해야 하며, 석방후 범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처우가 완전한 자유박탈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행형법 제3조).

여기에는 비용문제도 관련된다. 개방시설에는 건축 및 기술적인 보안시설, 특히 방호벽, 쇠창살, 특수보안장치가 부착된 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내에서는 보통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감시는 생략된다.

행형법의 취지에 따라 개방시설은 더욱 세분류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개방교도소인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Gustav-Radbruch-Haus)는 통상적인 개방시설에 부설하여 시설외부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외부통근자도 수용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의 반개방구역, 하나의 출소준비시설 그리고 대체자유형을 위한 중앙집행시설 등이 개설되어 있다.

(2) 施設內部의 矯正組織

a) 新入者專擔部의 設置

모든 시설에는 신입자전담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양질의 입소절차, 처우를 위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교정계획(행형법 제5조 내지 제7조)은 효과적인 치우행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9개월 미만의 자유형수형자 특히 미결구금시설에는 위기개입, 자살위험감소, 즉각적 사회적 원조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신입자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

b) 小規模의 施設單位

교정계획에 따른 처우를 위해서는 시설안에서 수형자는 각각의 보안등급상의 요청 또는 처우필요에 따라 소규모여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처우그룹이나 생활그룹으로 세분,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60명의 수용자가 한명의 고정된 간부직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교정단위이며, 여기서의 결정은 상호 협력적으로 그리고 개별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교정시설단위로는 지금까지 헷센주에는 공간적으로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실치되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제1 및 제2구치소, 룩켄과 비스바덴의 소년교도소, 프랑크푸르트의 제3여자교도소, 카셀의 사회치료시설 등이다. 기타 헷센주의 시설 특히 오래된 집중식건축물은 이제 마찬가지로 점차 적정하게 개조되어야 한다. 1995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보안1등급, 보안2등급 그리고 개방교도소의 각각 1개소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조치는 추가적인 인원없이 오직 인원의 범위내에서 병렬적인 구조조정만을 통해서 실시한다.

- 일반교도소 직원 및 특수한 전문직 요원의 상당수가 각각의 교정단위시설에 배치된다.
- 개별 교정단위시설에서의 직원투입은 중앙의 투입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별 단위시설에서 분권적으로 시행된다.
- 개별단위시설에서 직접적인 재소자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교정단위들간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더욱 많아진 책임을 고취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직원교육이 실시된다.
- 개별시설의 업무집행의 신축성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교정직원의 처음 두 가지의 승진과 관련된 직무에서 임용과 승진에 대한 관할권을 감독관청으로부터 교도소로 위임하하며, 예산관리에 있어서도 개별 교도소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c) 矯正職員의 投入

전문지식과 관심 그리고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직원이 없이는 교정에 있어서 처우도 보안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도 양적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인

적 자원이 확보되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단위의 정비를 통하여 특히 일반적인 교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권한과 동기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당면한 인사조치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일반직원의 보직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었다. 이빈 검토에서 '헷센주교정(Hessischer Strafvollzug)'이라고 불리우는 전문가위원회의 작업에 따라 감독관청이 추산한 추가적인 보직수요는 200개소에 달했다. 그밖에도 작업그룹은 교도소의 분권적인 근무계획(예컨대 근무시간의 신축적인 조정가능성)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상세히 검토하였고, 초과근무명령의 이행지침도 마련하였다.

나. 處遇內容의 調整

(1) 矯正全般

수형자의 작업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은 연방법의 차원에서 좌절되었다. 행형법 제200조 제1항은 현재 작업수당에 대한 수형자의 요구를 작업성적에 합당한 통상적인 급료의 5%로 제한하고 있다. 1995년 현재 평균 일당은 10.33DM(1DM은 고객매수가격으로 약 520원)이다. 헷센주의 교정정책은 현제의 법규정에 기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를 새롭게 평가하고 시설내의 작업여건을 적정하게 조직하려고 진력하고 있다. 폐쇄시설 내부에서의 수형자를 위한 자유로운 취업관계, 작업운영에 관한 상업직인 지도, 취업단체의 구성 그리고 기존의 자치적 매점운영의 확장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수형자의 작업에 대하여는 그 성적에 상응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재사회화 기금재단의 모델에 따라 수형자의 직업교육과 교육모델의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헷센주교정체육은 더욱 체계화되었다. 교정시설의 새로운 체육설비는 매년 운영되고 있고, 체육지도를 위한 일반교정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체육과 교정(Sport und Justizvollzug)'이란 이름의 협의회에서 헷센주체육연맹, 헷센소년체육, 헷센교정체육 등의 단체가 상호협력한다. 이러한 상호협력의 결과는 대략 체육지도자를 위한 젊은 수형자에 대한 계획적인 교육, 교정시설과 스포츠클럽 그리고 학교간의 자매결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문화부문에서는 수형자의 재사회화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헷센주전역에 알려진 '감옥안의 예술(Kunst im Knast)' (사진, 회화, 조각) 그리고 '창살뒤편의 연극(Theater hinter Gittem)'(연극, 음악, 버라이어티쇼)등과 같은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된다. 1994년부터는 헷센주작가연맹과 공동으로 연극 및 문학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주노동국과 수형자훈련원(Fritz-Bauer e. V.)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은 연방노동청의 지원자금의 급격한 삭감조치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시행된다.

형벌완화조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형자들은 시설내에서라도 그들의 파트너나 가족들의 방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슈발름슈타트교도소와 부츠박흐교도소에서 현대적 시설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공간에서 장시간면회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면회공간이 장기수형자를 위하여 헷센의 기타 교도소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처우곤란수형자 또는 사회적 예후가 긍정적이지 못한 수형자에 대한 출소준비는 특별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안에서 특수 사회적 처우직원에 의하여 형기만료 1년전부터 특별한 사회심리적 처우를 받고 석방후 배치될 보호관찰관 및 시설내외의 외근직원과의 접촉을 개시하여야 한다. 시범적 시도의 하나로서 1994년 5월 중순부터 카셀 제1교도소에서 이러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다.

카셀 사회치료소의 현재의 사회치료가능성 및 직업훈련시설이 더욱 잘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 및 학교교육을 받고 있거나 특별한 보호와 동반이 필요한 수형자는 이러한 사회치료시설에 더욱 용이하게 입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시설은 더욱 분권화, 지역화되고 있다. 풀다와 기센의 교도소에 외부통근자구역이 개소된 이래로 개방시설의 수용능력은 1,013석이 되었다. 이로써 수형자의 거의 3분의 1이 수용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개방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기센교도소에 추가로 83석짜리 개방구역이 완성된 이후 1995년 초부터 비로소 헷센주 전역에 주거 및 작업장 인근에 위치한 개방시설이 마련된 것이다.

개방시설은 두 개의 대규모 분류수용시설, 즉 우선은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Gustav-Radbruch-Haus, 476석규모)에

나중에는 슈발룸슈타트교도소(Kornhaus, 89석규모)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세분 또는 통합하는 식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제고한다.

- 알콜남용이나 지각귀소 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에 의문이 있어 개방시설수용을 위한 공식적인 특별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러나 공공의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 수형자를 위한 이른바 '반개방(halboffen)' 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개방시설에서 폐쇄시설로의 이송을 대폭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범의 의심을 이유로 그러한 이송이 불가피했던 경우는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 이른바 '단기형모델(Kurzstrafenmodel)'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판결의 기판력발생후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6개월 이하)는 폐쇄교도소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의 미결구금시설로부터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의 개방시설로 바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실무절차는 이미 시험되었기 때문에 잔여형기 12개월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다른 구치소로부터도 직접 이송될 수 있어야 한다.
- 외래외 출소준비교정은 장기휴가형태로 집행되어야 한다. 행형법 제124조에 의거 교도소장은 행형의 완화조치를 재범에 남용할 위험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 출소준비를 위하여 최장 6주까지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 때 명확한 지시사항을 부과하고 특히 보호자의 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치료시설에서만

실시되어온 이러한 실무절차는 이제 개방교도소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심리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회치료적 관점에 의하여 조직된 부서의 설치를 전제로 한다.

- 수용능력이 늘어난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는 대체자유형집행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의 課를 설치하였다. 대체자유형수형자를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폐쇄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보다 형사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들 수형자는 비례적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단지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벌금불납으로 인하여 이를 '대신하여' 자유박탈을 받는 경우로서 특별한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대체자유형의 집행은 폐쇄교도소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준다. 대체자유형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의 課는 대체자유형의 사례를 현저히 줄이기 위하여 벌금형의 민사적 집행과 행형으로부터 공익노동(한국 형법 제62조의 2등의 사회봉사명령에 유사한 제재)으로의 연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익노동을 통하여 벌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헷센주의 규정은 먼저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特殊問題

최근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헷센주의 경우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 시작된 외국인수형자보호를 위한 외부조직과의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교정단위의 건설을 통하여 시설안에서 외국인수형자의 문제를 더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국적 소유자를 일반교정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수형자의 추방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자유형의 집행면제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약물중독수형자의 처우와 보호를 위하여 1980년부터 외부의 마약문제상담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 교도소 및 감호소의 개방시설에서의 수용처우를 위한 연계
- 부분수용시설, 자발적 노력을 위한 시설 그리고 통원의 보호, 처우, 치료를 위한 연계
- 상담 및 동기부여활동(특히 대체처우영역)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정서안정
- 치료설비를 위한 계속적인 주도

헷센주 교정시설에서의 시설외부의 약물문제상담을 위한 폭넓은 시설확충은 여러 해에 걸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기센과 프리트베르크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보호망에서의 마지막 흠결도 해소되었다.

1992년부터 헷센주 교정시설에서는 메타돈과 관계되는 헤로인중독자처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내부에서도 시설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대신 처우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이래로 모두 800명 이상의 메타돈중독수형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비스바덴교도소에서 개발된 자발적 약물통제프로그램 - 행형완화조치와 연계시킨 의료적 통제 - 은 다른 교도소에서도 약물중독수형자처우를 위한 처우 및 보호프로그램

의 한 부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미결구금자 교정분야에서는 연방법을 통한 포괄적 법규정의 입법을 위한 각 주의 법무장관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정이다. 바이터슈타트의 구치소신축이 1993년초에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없게된 후, 바로 그 해에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를 위한 계획이 입안, 집행되었다. 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미결구금을 위한 이른바 '작은 집(Kleines Haus)'의 개소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제1 및 제2교도소의 내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교도소의 課와 포괄적인 주거그룹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개편조치는 직업 및 학과교육, 노동치료, 사회훈련과정 그리고 개선된 스포츠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수형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보완되었다.

앞으로 미결구금시설의 당면한 과밀수용문제 특히 라인·마인지역의 경우 폐쇄교도소의 여유가 생긴 공간을 이용하는 식으로 다른 교도소도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폐쇄교도소로부터 개방교도소로 적시에 적절한 수형자를 이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이미 언급하였듯이 수형자의 일정 부분 특히 사회적 예후가 양호한 자를 조기에 개방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미결구금자는 그의 동의하에 이송될 예정인 관할 교도소로 지체 없이 이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형자는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기판력발생시까지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교정시설의 보호 및 처우프로그램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保安體制의 再編

(1) 施設의 外的 保安

헷센주의 교정시설에서 보안체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적인 보안시설, 즉 건축, 기계장치, 기술 그리고 전자적 장치 등을 바탕으로 한 개선된 행정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술은 교정시설직원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지 보조수단이 될 뿐이다.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건축상의 보안장치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보안기술에도 불구하고 교정직원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주와 비교하여 헷센주의 교정시설이 고도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새로운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가장 최신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보안프로그램을 위하여 약 1,500만마르크(DM)의 예산조치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교도소에서의 기계적인 외적 보안의 개선을 통하여 통상적인 위험상황의 경우 감시요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1993년부터 발전시켜왔고 그것이 가시화되면서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것들은 슈발름슈타트, 카셀 제1, 카셀 제2, 프랑크푸르트 제1, 바이터슈타트 등의 교도소에서 시도되어 잠정적으로 예측하기로는 1997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현실화에 있어서 한편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875만마르크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의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절감효과는 약 45명에 이른

다. 그밖에도 보안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망간으로 된 강철창살의 설치, 통로와 사방자물쇠의 교화, 입구의 보강, 경보장치 및 개별사방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 他部署職員들과의 協力

교정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재소자 그리고 주민의 안전은 교정직원과 다른 공무원들간의 마찰없는 협력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a) 다른 矯正行政機關과의 協力

현재에도 州法務部의 행정직원들과의 협력은 실무상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안, 치료, 교육, 의료적 원호를 이유로 한 이송에 있어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또한 각 주의 보안관계 전문가들간의 정보교환도 앞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b) 組織犯罪分野의 刑事訴追機關과의 協力

조직범죄로 인한 위험은 교정상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조직범죄 추적은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통괄하는 모든 관계자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1991년 4월부터 조직범죄의 소추에 있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교도소의 협력에 관한 헷센주의 내무 및 법무부 공동의 회람이 돌려지고 있다. 조직범죄분야에서의 헷센주 범죄수사국의 교정과 관련된 인식은 교정직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집약되어 있다. 범죄수사국은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재소자에 관하여 교정시설당국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행형완화조치와 개방시설로의 이송에서 주의하여야 할 행정규칙들은 확대해석되어 조직범죄관련수형자의 경우 교정공무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경찰간의 정례적인 직무상의 대화와 그들 공동의 정보 및 재교육과정에 행형직원도 장차는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人質, 暴動과 같은 特別한 狀況에 대한 對處

교정시설에서 인질극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대응조치를 위하여 1994년에 헷센주 내무부와 협의를 거친 규정 한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인질대치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에 관한 행동지침 및 경찰과 교도소의 복잡한 관할체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투입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었고, 투입본부도 개별교도소에 계속 설치될 것이다. 관할 경찰관서와 공동의 연습과 계획협의 및 교도소의 정례적인 합동훈련도 계획되어 있다. 경찰과 접촉을 위한 대표자와 협력관도 임명되었다. 위기상황의 경우 직원이 취할 행동은 정례적인 소내 재교육을 통하여 준비된다.

(4) 不必要한 規定의 整理

여러 가지 이유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상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게 되면 직원들은 필요한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행동규정도 간과하는 수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헷센주의 모든 교정시설에 총괄적으로 통용되는 보안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5) 特別히 危險한 受刑者의 收容과 處遇

통상적인 교도소의 특정구역에 수용된 위험한 재소자에게도 적용되면서도 그러나 개별적인 요건에 따른 조치에 의거 그 사방 내에서의 특수한 보안조치에 복종해야 하는 특별한 헷센주의 행형 실무상의 통합계획은 이미 시험되었다. 따라서 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Ⅱ 矯正處遇에 대한 法的 根據

○ 未決拘禁

미결구금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결구금집행규정(UVollzO)과 관련된 형사소송법(StPO)상의 규정이다. 미결구금은 피의자의 도주 및 또는 실체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나아가 미결구금은 이러한 구금사유와 별도로 특히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했다는 긴급한 혐의가 있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판사에 의하여 명해질 수도 있다.

○ 自由刑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개선보안처분의 집행근거는 연방 행형법(StVollzG)이다. 따라서 자유형집행기간동안 일반공중의 보호목적이 뒤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지만 행형의 중심목표는 범죄행위자의 사회로의 재통합이다.

○ 少年刑罰

소년형벌 및 소년구금의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소년사

법법(JGG)이다. 이에 따라 소년행형은 교육적 처우지향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행형목적은 소년수형자가 장차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의식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년행형에서는 학과교육과 직업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 少年拘禁

소년구금(자유시간구금, 단기구금 또는 장기구금)은 소년 및 청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다음의 경우에 명해질 수 있다.

- 단순한 경고나 부담사항의 부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
- 행위자의 현존하는 위험성 및 범죄행위의 특별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소년형벌의 선고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경우

Ⅲ. 矯正施設

1. 矯正組織

미결구금, 자유형, 보안감호, 소년형벌 그리고 소년구금의 집행을 위하여 헷센주 전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크기로 분산되어 있는 15개소의 독립된 교정시설(3개의 지소, 12개의 개방처우를 위한 구역 그리고 본부병원 등을 포함)과 2개소의 소년구금시설이 있다. 전에는 부츠박호교도소의 지소였던 기센교도소는 개방처우를 위하여 중축(Wolfgang-Mittermaier-

Haus)된 뒤 1995. 1. 1. 부터 독립되었다. 몇 곳의 區法院(Amtsgericht)에는 자유시간구금을 위한 공간이 부설되어 있다. 헷센주 내무부와의 업무협조 그리고 농입, 임입, 자연보호 등을 위하여 추방자를 구금집행하는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에 부설된 오펜박흐 추방자구금시설이 가동중이다.

교정직원의 교육 및 재교육은 비스바덴에 있는 헷센주 교정직원 교육 및 재교육훈련원(H. B. Wagnitz-Seminar)에서 실시된다.

헷센주교정에는 교정국(Justizvollzugsamt)형태의 중간관청이 없다. 사법 및 유럽문제담당의 部(Das Hessische Ministerium der Justiz und fur Europaangelegenheiten)에 행형을 담당하는 課(Abteilung)를 두어 교도소 및 교육훈련원에 대한 직무감독을 직접 담당케 하고 있다.

건강보호영역에 있어서는 환경, 에너지, 소년, 가정 그리고 건강 등을 담당하는 部(Das Hessische Ministerium fur Umwelt, Energie,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와 주정부 의료분과위원의 선문적인 사문을 받는다.

개별교정시설은 그 업무영역이 분장되는 課(Abteilung)들로 구성된다. 개별시설은 대체로 다음의 예에 준하여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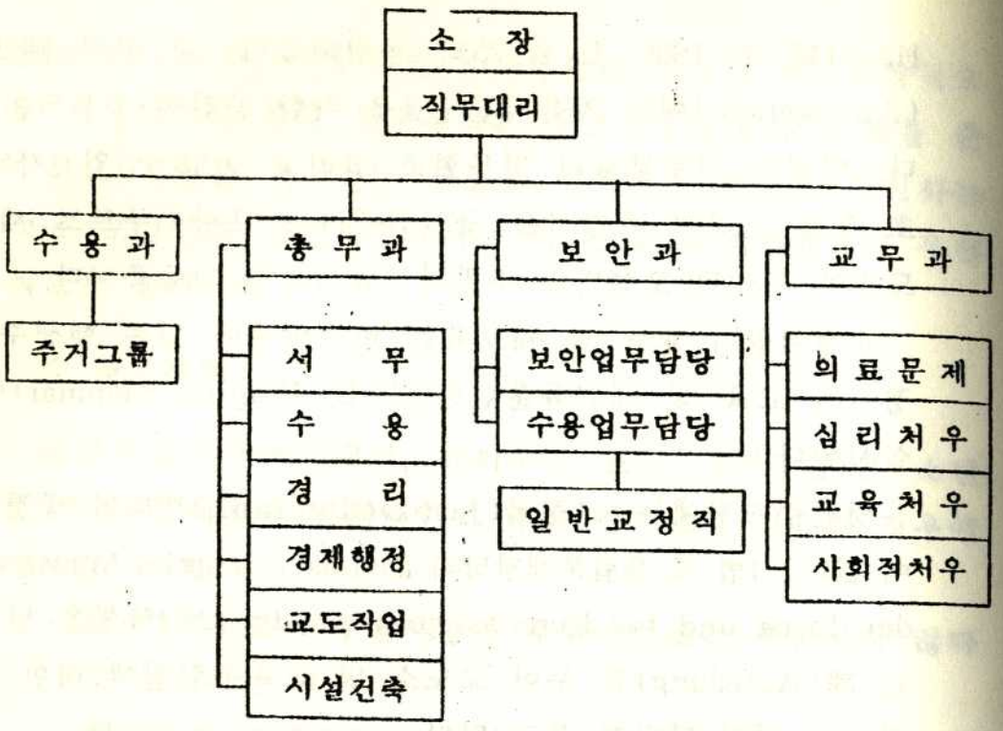

2. 新規施設建築現況

1995년 당시 진행중이던 시설건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츠박흐교도소

- 행정 및 숙소건물의 보안설비 및 증축, 직물공장설비. 1996년 이후 준공, 공사비 약 5,100만마르크
- 본부세탁소를 포함한 경제사동. 1995년 준공, 공사비 약 3,000만마르크
- 병동신축. 1996년 이후 준공, 공사비 약 460만마르크

○ 다름슈타트교도소

- 공장. 1996년 작업종료, 공사비 약 720만마르크

○ 디이부르크교도소

- 수용자를 위한 공동생활공간 및 소규모 교정단위 확보를 위한 증축. 1996년 준공, 공사비 약 1,400만마르크

○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

- 난방시설개수, 1996년 준공, 공사비 약 1,400만마르크

○ 프랑크푸르트 제3교도소

- 시설의 개축 및 변경, 2000년 이후 준공예정, 공사비 약 9,200만마르크

○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

- 하마디사건을 위하여 설치된 보안장치의 철거. 1996년 완료, 공사비 약 360만마르크

○ 카셀 제1교도소

- 라이프찌거가에 있는 지소의 감시탑건축, 1995년 준공, 공사비 약 70만마르크

○ 바이터슈타트교도소

- 신축 및 재건축. 1997년 준공, 공사비 약 2억 7,500만마르크

○ 바스바덴교도소

- 경제사동개축. 공사비 약 440만마르크
- 목공을 위한 창고개축. 공사비 약110만마르크

헷센주의 모든 교정시설의 보안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건축을 위하여 1995년에 약 200만마르크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었다.

中期의 자상건축물 건설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

- 바이터슈타트교도소의 건축완공후의 신축, 공사비 약 1억 3,000만마르크

○ 부츠박호교도소

- 실내체육관설비 및 시설외벽개수. 1997년 개시, 공사비 약 900만마르크

○ 프랑크푸르트 제2교도소

- 정문개축. 공사비 약 130만마르크

3. 矯正에의 公衆參與

(1) 矯正諮問委員會

개별 교정시설에는 교도소와 일반공공 사이의 중간자로서 기능하는 교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교정시설이 소재한 시의회(Magistrat) 또는 군의 군위원회(Kreisausschuβ)의 추천에 의거, 부츠박호, 다름슈타트, 프랑크푸르트 제1, 카셀 제1 등의 교도소에는 7명, 기타는 5명의 자문위원회 위원을 헷센주 법무부가 5년 임기로 위촉한다. 위원회를 위하여는 교정의 과제와 목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출소수형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태세가 되어있는 인사가 위촉되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위원회 그리고 범죄자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적 처우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교정업무를 주로 다루는 사법행정상의 직원이나 교정시설에 영업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위원회구성원에 배제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정의 집행 그리고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들은 권고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교정시설의 장을 지원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다(행형법 제163조). 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교정의 계획 및 차후 발전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고, 시설밖의 공공에게 교정의 현실과 그 문제점을 전달해주며,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이라는 관심사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교도소장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문위원은 요구사항, 권고 그리고 항의를 청취할 수 있다. 그들은 수용, 작업, 직업교육, 급식, 의료조치 및 처우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정시설과 각종 설비를 관찰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수형자 및 미결구금자의 사방을 방문할 수 있다. 대화내용과 서신교환은 감시되지 않는다(행형법 제164조).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장은 특히 긴급한 사건발생, 중요한 소내규칙의 발령, 중요한 조치, 소내행사, 그리고 시설방문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지한다.

(2) 自願奉仕者

범죄인보호는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해결과제이다. 자유형집행기간중은 물론 석방후에도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의무의 상징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공무원인 교정직원이 없거나 개별적인 임무를 위한 특별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 등에 교정의 흠결을 메워주거나 보충해주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자유박탈을 최소한의 사회적 손실로 마무리하게 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뒤따르는 사회화과정에서 하나의 기회를 열어주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이고 치료적인 교정의 통합적이고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다.

자원봉사자는 수형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소 또는 경감해주고, 학습과 직업상의 능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석방을 준비하며,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준비하며, 수형자가 자유시간을 의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 요구된다.

헷센주에는 1994년의 경우 약 54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는 그의 능력과 소질이 주어진 행형과제에 적합하고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선발된다. 자신이 지난 5년 이내에 자유형 또는 소년형벌을 복역하였거나, 보호관찰 또는 행장 감독을 받았거나, 형사소송절차상의 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소송에 계류중인 사람은 자원봉사자인 보호자로서는 고려될 수 없다.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처음부터 전문적인 사전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8월호에 계속됨)

19738590

교정256
(1997.8)

獨逸 헷센州의 矯正制度(2)

金 丙 柱
(京畿大 講師, 法學博士)

〈目 次〉

Ⅰ. 머릿말
Ⅱ. 矯正處遇에 대한 法的根據
Ⅲ. 矯正施設
Ⅳ. 矯正人力
Ⅴ. 矯正費用
Ⅵ. 收容現況
Ⅶ. 開放處遇
Ⅷ. 矯正緩和 및 休暇制度
Ⅸ. 學科 및 職業敎育
Ⅹ. 矯導作業
Ⅺ. 特殊處遇
Ⅻ. 自由時間, 體育, 文化活動

編譯者 註) 이 글은 1995년 헷센주 법무성이 헷센주 교정의 대강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소책자형태로 발간한 "Justizvollzug in Hessen - Informationen und Zahlen, 1995"의 내용중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독일은 국가형태가 연방공화국으로서 교정업무는 주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교정의 근거법규로는 연방법인 행형법(Gesetz un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csntziehenden Ma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1976)이 있지만, 그 집행은 각 주마다의

Ⅳ. 矯正人力

1. 個別職業群

헷센주의 교도소는 주로 법학 또는 심리학에 관한 교육을 받았거나 과거의 상급의 교정 및 행정직에서 직무수행능력을 특별히 검증받은 고위직(Höherer Dienst)의 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들 고위직 공무원은 교도소의 조직, 인사, 그리고 재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급의 교정 및 행정직(이하 '상급자'이라 약칭한다. gehobener Vollzugs - und Verwaltungsdienst)에 속하는 공무원은 보통 개별적인 책임영역(예컨대 교도작업, 인사 등)의 전문분야의 장이나 보안과장 또는 행형(수용)과장 등에 보임된다.

이들 직무집행을 위하여 행정의 더 세분된 영역(경리, 수용 등)에서는 중급의 교정 및 행정직(이하 '중급직'이라 약칭한다. mittlerer Vollzugs-und Verwaltungsdienst)에 속하는 직원들이 활동한다. 지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들 공무원그룹으로부터 이미 상급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직급의 1호봉은 1994. 10. 1. 부터는 보수체계 A5가 아닌 A6에

고유한 특성과 법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정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탐구를 위해서는 연방법인 행형법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 실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6개에 달하는 주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독일 교정실무를 개관하는 작업의 첫번째 시도로서 여기서는 헷센주의것을 소개한다. 그동안 우리 교정계는 이론 및 실무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모델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우리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제3의 대안으로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부터 시작된다.

교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공무원집단은 일반직(allgemeiner Vollzugsdienst)이다. 수용자와 상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이들 직원은 보안, 질서유지 그리고 급양업무와 함께 처우행형에 집약되어 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일반직의 공무원은 특별한 처우업무의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들 직군에 대한 직업이미지는 내용적으로도 보수체계상으로도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1990. 1. 1부터 이들 직군의 1호봉은 보수체계상의 A5에서 A6로, 1993. 1. 1. 부터는 다시 A6에서 A7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나아가 최고참직에 있는 일반직공무원은 상위직으로 건너뛰기도 한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직공무원인 간호직(Krankenpflegedienst)에 속하는 시험을 거친 간호사가 이를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전문적 자질을 갖춘 직원은 수용자의 직업교육 및 재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주로 중급직에 속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상급직에도 속하기도 하는 작업기사직(Werkdienst)의 직원이 교도소의 작업장과 직업훈련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수용자의 의료적 처우와 보호는 상근직의 의사(Arzt)가 이를 담당한다.

심리처우직(psychologischer Dienst)은 수용자의 처우조사와 교정계획업무를 관장한다. 이들은 사회심리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처우결정시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복지직(Sozialdienst)은 수용자의 보호와 처우에 심리 치우사와 더불어 매우 긴밀하게 관련된다. 이들은 처우계획 수립, 조직, 조정 그리고 보호 및 처우조치의 시행에 관여하고 재소자가 그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력한다.

교정시설에서 교사직(padagogischer Dienst)의 업무는 우선 수용자를 위한 수업의 진행이다. 또한 이들은 시험의 실시 그리고 능력의 평가와 통제 등의 직무도 담당한다. 나아가 이들은 재소자에게 교육, 재교육 기타 각종 교육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하고 조언한다.

교정시설의 사제직(Seelsorge in den Justizvollzugsanstalten)은 목사나 신부가 이를 담당한다. 이들은 주정부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개별 교회나 교구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교회의 직무감독을 받으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교정에 관계되는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교정에 있어서 사제직의 활동의 구체적인 것들은 특별한 직무규정을 두어 이를 정한다.

2. 矯正職員充員現況

1977. 1. 1. 행형법 시행 이후 1995 회계연도까지 전체 교정직원의 증가는 모두 927명으로, 이는 이 기간동안 54.5%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16명의 상근직인 신교 및 구교의 성직자도 추가된다. 또한 일일평균 재소자수가 1977년에서 1994년까지의 기간중 26.3%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직원의 충원상황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에는 재소자 100명당 직원이 41.13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재소자 100명당 50.63명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평가가 가능하다.

보다 분명히 개선된 점은 특히 수형자와 긴밀한 접촉을 해야하는 직군에 속하는 직원의 증원이다. 특수한 전문직(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과 일반직 나아가 간호직 등에 증원이 있었고 그리하여 훨씬 양호한 보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矯正職員實數(1977, 1995) (단위 : 명)

직 군	1977	1995
고위직	17	33
의 사	14	17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14	41
교 사	25	37
사회복지사	62	123
상급직	54	66
중급직(사무직포함)	178	252
일반직	1,170	1,784
간호직	43	96
작업기사	101	138
일반노동자	22	26
기 타	0	14
합 계	1,700	2,627

3. 矯正職員에 대한 敎育 및 再敎育

(1) 敎 育

1987년 10월에 개소한 비스바덴에 있는 헷센주 교정직원교

육원(H. B. Wagnitz-Sem.nar)에는 일반직, 작업기사 및 간호직, 중급 및 상급직의 교육생을 위한 67명의 수용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일반직의 수석 사무직원교육이 교육의 핵심이다. 교육기간은 24개월이고, 이는 이론분야(7개월간의 교육원에서의 기본교육 및 졸업교과과정)와 실무분야(17개월간의 교도소실습)로 나뉘어 교육된다.

1994년의 경우 88명의 교육생(남자 77명, 여자 11명)이 4가지의 기본교과과정을 그리고 116명의 교육생(남자 88명, 여자 28명)이 6개의 졸업교과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12명(여자 6명, 남자 6명)이 중급직의 직급을 위한 졸업교과과정을 수료하였다.

상위직을 위한 교육은 바트 윈스터라이펠 전문대학에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교육협회에서 실시되며, 이 때 교육에 부수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교육원에서 실시된다. 다양한 헷센주의 교정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이 뒤따른다. 1994년에는 7명(여자 1명, 남자 6명)이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

(2) 再教育

헷센주 교정시설의 직원을 위한 재교육은 헷센주교육원(H. B. Wagnitz-Seminar), 각 교정시설 그리고 외부 재교육기관 등에서 행해진다. 다양한 직무영역(예컨대 시설운영, 교도작업 및 경제행정, 심리치료,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직, 일반직의 지도력 기타)을 위하여 수년동안 검증받은 형태인 주제중

심의 워크샵 이외에도 교과과정과 관련되는 여성을 위한 특별한 재교육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도 있다.

여기에 병행하여 교정시설의 상이한 운영분야를 위하여 실무의 일상적인 직무에서 등장하는 지도상의 다양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교정시설 스스로에 의하여 보안, 교정계획, 기본적인 시설운영지침의 작성과 실시 나아가 전체 교정직원의 공동노력 등을 토론하는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재교육도 고려되고 예산조치를 통하여 지원된다.

1994년에는 모두 1,488명(1993년에는 1,315명)의 직원(그 중 여자가 347명, 1993년에는 283명 이었음)이 이러한 목적의 각종 워크샵이나 재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再教育現況(1994) (단위 : 명, 일)

프 로 그 램	참가자수			재교육원수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워크샵	332	251	81	309	96
교과과정에 따른 재교육	35	28	7	116	35
업무와 관련된 재교육	342	289	53	864	137
여성문제와 관련된 재교육	28	0	28	0	110
직업에 부수되는 재교육	119	83	36	207	69
비무장 호신술	27	26	1	48	3
전산정보처리	24	23	1	23	1
시설자체내 재교육	260	209	51	465	103
인사문제관련 재교육	73	61	12	468	190
기 타	248	171	77	161	5
합 계	1,488	1,141	347	2,661	749

Ⅴ. 矯正費用

1. 總費用

1994년도 헷센주 교정을 위한 전체지출(실제지출, 시설신축비용은 제외)은 약 2억 4,780만마르크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110만마르크(4.7%)가 증액된 셈이다. 1995년도는 약 2억 5,950만마르크가 계상되었다(마찬가지로 4.7%의 증가율).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1994년의 경우 9.2%에 해당하는 약 2,280만마르크에 교도작업수입에 의하여 충당되었다(1993년은 2,210만마르크). 1995년에는 약 2,530만마르크가 이에 충당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年度別 矯正豫算案 (단위 : 1,000DM)

연도	수입	지출	보조금	
			금액	%
1985	21,165	158,146	136,981	86.6
1986	21,571	165,408	143,837	86.9
1987	22,128	170,067	147,939	86.9
1988	20,718	178,881	158,163	88.4
1989	21,288	184,376	163,088	88.4
1990	22,954	190,610	167,656	87.9
1991	23,154	193,926	170,722	88.1
1992	25,555	219,306	193,751	88.3
1993	26,535	229,800	203,265	88.5
1994	27,055	253,769	226,714	89.3
1995	25,267	259,553	234,286	90.3

2. 收容者 1人當 費用

재소자 1인의 일일수용비용은 전체지출에서 전체수입을 공제하고 교도소건물과 집기를 위한 실제비용을 가산하여 이 수치를 전체 수용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법무부 교정국의 지출, 보조금, 재정지원 그리고 직원의 급양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年度別 收容者 1人의 1日收容費用 (단위 : DM)

연 도	금 액	연 도	금 액
1969	21.80	1986	103.59
1970	32.40	1987	116.43
1976	45.87	1988	135.19
1977	53.24	1989	130.92
1978	56.27	1990	130.66
1982	72.10	1991	146.28
1983	73.36	1992	155.35
1984	79.27	1982	150.93
1985	88.78	1994	149.47

Ⅵ. 收容狀況

1. 概況

교도소의 각종 시설은 엄격한 분리원칙과 개별화원칙에 의거 갖추어져야 한다. 교정현실이라는 관점 그리고 실제적이고 장차의 수용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 사법행정은 특히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전체 행형계획에서 교도소 시설의 물적(집행의 종류와 기간), 장소적(주거지) 관할을 규정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균등

하게 교정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헷센주 교정시설의 개별적인 분야에서의 상이한 수용자수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상황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 형사소추의 강도, 법적인 정책결정(예컨대 마약범, 대안적인 형사제재 등) 기타 다른 수많은 변수, 그러나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입수할 수는 없는 요소 등에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2. 1994年度 헷센州 矯正施設 收容現況

(1) 閉鎖矯導所

個別 閉鎖矯導所 收容現況(1994) (단위 : 명)

개별교도소	수용능력(1월1일) 남자, 여자	최대수용인원 남자, 여자	평균수용인원 남자, 여자
Butzbach	492	566	518
ZwA Friedberg	65	68	61
ZwA Greβen	137	170	153
Darmstadt	435	529	487
Dieburg	288	292	280
Frankfurt Ⅰ	623	848	762
ZwA Hanau	56	74	67
Frankfurt Ⅱ(Höchst)	159	189	164
Frankfurt Ⅲ(여자)	225	194	177
Fulda	75	108	87
Kassel Ⅰ	554	734	685
ZwA Leipziger Straβe	109 5	161 12	105 17
Kassel Ⅱ	140	154	126
Limburg	68	98	75
Rockenberg	174	193	180
Schwalmstadt	265	299	257
Wiesbaden	330	325	301
합 계	3,970 230	4,808 206	4,308 184
남여합계	4,200	5,014	4,492

(2) 開放矯導所

個別 開放矯導所 收容現況(1994) (단위 : 명)

개별교도소	수용능력(1월1일) 남자, 여자	최대수용인원 남자, 여자	평균수용인원 남자, 여자
Darmstadt	134	120	100
Dieburg	18	18	11
Frankfurt Ⅳ	420	438	367
Frankfurt Ⅲ(여자)	60	55	41
Fulda(1994. 8부터)	9	5	1
Kassel Ⅰ Aspenstr.	25	26	19
Kassel Ⅰ Baunatal	39 12	42 14	31 7
Kassel Ⅱ Hafenstr	25	28	21
Rockenberg	11	9	5
Schwalmstadt	89	91	72
Fliedner-H. Wiesbaden 임시폐쇄	0	0	0
Fliedener-H. Groβ-Gerau	14	14	14
합 계	784 72	791 69	635 48
남여합계	856	860	683
개방, 폐쇄교도소 합계	4,754 302	5,599 275	4,943 232
개방, 폐쇄교도소 남녀합계	5,056	5,874	5,175

3. 年度別 헷센州 矯導所(Justizvollzugsanstalt) 平均收容人員

年度別 矯導所 收容現況 (단위 : 명)

연도	평균수용인원	그중에서 여자수용자	수용정원(1월 1일)
1985	5,137	226	5,.009
1986	4,953	223	4,653
1987	4,972	228	4,538
1988	4,910	227	4,586
1989	4,751	245	4,602
1990	4,762	252	4,673
1991	4,845	224	4,697
1992	4,865	248	4,844
1993	5,085	259	4,840
1994	5,175	232	5,047

4. 年度別 헷센州 未決拘禁施設(Untersuchungshaft) 平均收容人員

연 도	평균수용인원
1985	1,245
1986	1,136
1987	1,188
1988	1,252
1989	1,344
1990	1,451
1991	1,633
1992	1,774
1993	1,875
1994	1,812

5. 年度別 헷센州 開放矯導所(offener Vollzug) 平均收容人員

연 도	평균수용인원	수용정원(1월 1일)
1985	702	951
1986	626	957
1987	632	957
1988	575	1,003
1989	565	799
1990	545	813
1991	541	783
1992	550	786
1993	614	783
1994	683	847

6. 年度別 헷센主 少年矯導所(Jugendstrafvollzug) 및 少年拘禁施設(Jugendarrestanstalt) 平均收容人員

연 도	소년교도소 평균수용인원	소년구금시설 평균수용인원
1985	457	50
1986	382	51
1987	373	46
1988	344	44
1989	319	38
1990	313	32
1991	286	29
1992	284	33
1993	303	38
1994	296	45

Ⅵ. 開放處遇

1. 處遇原則

행형법의 취지에 따라 개방처우가 통상적인 처우가 되어야 한다. 앞서 집행된 폐쇄시설처우기간과 이미 고착된 사회화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수용자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석방시점을 위한 자유 및 부담영역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수용자가 초기단계에서 무단으로 돌아다니면 계속적인 처우 및 시험과정으로 편입된다. 이와 같은 시험의 목표는 자유로운 취업을 위한 무계호 외부통근허가를 받기 위함이다.

1994년의 경우 형벌집행에 대한 소관검찰은 1982년부터 시행되었고 1993년초에 다시 정비된 개방교도소로의 직접이송의 방식으로 헷센주 개방처우시설에 1,810명의 입소요청자를 이송한 바 있다. 693명의 유죄판결선고자가 형기개시를 위하여 개방교도소에 보내졌다. 이들 가운데 단지 33명이 개방교도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폐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지적할 만한 문제점으로는 직접 개방교도소로 입소조치된 유죄판결선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들은 무계호 외부통근자로 분류되어 구외작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이제는 더욱 모두가 형벌집행관에 의하여 각각의 경우에 사전검증이 없이 그의 최종적인 수형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개방교도소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수형자로 복역할 수 있다. 또한 대체자유형수형자도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방교도소

입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주로 사회적 측면을 많이 고려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개방교도소 수용자의 수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收容狀況

1994년도 헷센주의 개방교도소 수용능력은 930명이었다. 이들 수용공간에는 1994년 연평균 일일수용자는 698명이었고, 연통산으로는 2,314명이 수용되었다. 그 가운데 1,056명(46%)는 자유로이 취업하는 무계호 외부통근자(Freigänger)로서, 낮에는 시설외부에서 자유로이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시 시설에 귀소하여 소내생활에 임하는 수형자들이다.

3, 開放處遇拒否

1994년도에는 모두 433명의 수형자가 개방시설에서 폐쇄시설로 이감되었다. 이는 전체 개방교도소 수형자의 18.7%에 달하는 수치이다(전년도는 18.8%). 개방시설 근무자들이 그곳에 수형자를 매우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고 일반공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수형자의 그릇된 행동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이와 같이 폐쇄교도소로 다시 이감되는 수형자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 處遇措置

폐쇄교도소와 비교하여 개방교도소에서의 치료 내지 교정적 처우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여기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

른 당연한 결과로 일반 공중의 생활관계에 적응시키는데 처우의 중점이 놓이는 까닭이다. 이는 특히 모든 자유로운 시민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그밖에 퇴근후에도 상당시간을 가족과 같이 지내거나 교도소 밖의 스포츠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무계호 외부통근자의 경우 한층 명백해진다. 가족과 직장이라는 생활반경은 별다른 대규모 인적인 비용지출 없이도 행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채무까지 변제할 수 있다.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의 적응은 수형자가 시설외부에서 갈등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폐쇄교도소에서는 '갇혀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곤란해지는데 반하여 개방교도소 직원의 도움이 뒤따르기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5. 無戒護 外部通勤의 財政現況

개방교도소에 수용된 무계호 외부통근자의 재정상황은 전적으로 구체적인 노동시장사정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직원과 노동부지역사무소의 집중적인 협력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과의 원만한 접촉에 힘입어 충분한 외부통근자를 취업에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

1994년도의 경우 개방교도소에서 복역중인 1,056명의 무계호 외부통근자(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자)들이 그들의 고용주로 받은 급료와 직업훈련보조비로 550만마르크를 벌어들였다. 또한 약 130만마르크가 '기타 수입'으로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기에는 폐쇄교도소로부터 이체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1994년도 무계호 자유통근자들의 급료수입의 사용내역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헷센州 無戒護 外部通勤者給料의 使用內譯(1994) (단위 :DM)

사 용 내 역	금 액	%
Lebensunterhalt(생계비)	2,749,705	48
Schuldentilgung(채무변제)	379,891	7
Unterhaltszahlungen(부양료지불)	1,346,045	24
Haftkostenbeiträge(구금비용충당)	710,523	13
Gerichtskosten(소송비용)	113,564	2
Sonstiges(기타)	345,379	6

Ⅷ. 矯正緩和 및 休暇制度

1. 一般的인 狀況

1994년도 재소자를 위한 휴가허가상황은 전년도에 비하여 8.3% 증가한 26,72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지만 1982년도 이래의 평균치에 근사한 실적이다. 휴가로 부터의 미귀자는 253명이며, 이러한 휴가남용율은 0.9%로서 1982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2. 拘禁으로부터의 休暇

(1) 年度別 休暇實績

年度別 休暇實績 (단위 : 명, %)

연도	휴가허가			미귀자			휴가남용율(%)		
	폐쇄교도소	개방교도소	합계	폐쇄교도소	개방교도소	합계	폐쇄교도소	개방교도소	합계
1985	6,627	23,568	30,195	322	41	363	4,90	0,20	1,20
1986	7,523	22,871	30,394	317	28	345	4,20	0,10	1,10
1987	7,141	20,993	28,134	306	39	345	4,30	0,20	1,20
1988	6,442	19,889	26,331	282	43	325	4,40	0,20	1,20
1989	6,559	20,431	26,990	303	56	359	4,60	0,30	1,30
1990	6,200	19,279	25,479	302	47	349	4,90	0,20	1,40
1991	5,878	20,190	26,068	219	40	259	3,70	0,20	1,00
1992	5,563	18,739	24,302	263	38	301	4,70	0,20	1,20
1993	5,118	19,560	24,678	219	39	258	4,30	0,20	1,10
1994	5,640	21,085	26,725	208	45	253	3,70	0,20	0,90

(2) 閉鎖矯導所의 休暇

1994년도 성인 남자의 폐쇄교도소에서의 휴가남용율은 3.7%였다. 보안등급상 1등급 시설에서는 남용율이 감소하였다. 부츠박흐교도소의 남용율은 5.4%로 변화가 없었지만, 슈발룸슈타트교도소의 경우는 0.8% 감소하였다. 카셀 제1교도소에서도 이 수치는 3.9%로 감소하였다(전년도는 5.0%).

카셀의 사회치료시설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559건의 허가된 휴가중에서 단지 13건(2.3%)만이 남용되었던 것이다. 정시보다 지연되었으나, 자의로 귀소한 수형자를 고려하면 남용율은 2.0%까지 감소한다. 성인여자 폐쇄교도소에서는 123명중 2명이 휴가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閉鎖矯導所 休暇濫用率 (단위 : %)

폐쇄교도소 유형	남용율		그중 자의귀소자를 공제하면	
	1994	1993	1994	1993
1. 남자폐쇄교도소	3.80	4.30	2.70	2.60
2. 여자폐쇄교도소	1.60	5.00	0.80	5.00
3. 소년폐쇄교도소	2.10	3.00	1.40	2.00
4. 소녀폐쇄교도소	0.00	11.10	0.00	11.10
평 균	3.70	4.30	2.60	2.60

(3) 開放矯導所의 休暇

개방교도소의 휴가남용율은 0.20%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난 남용율은 헷센주 교정분야에서 수용자 개인의 치우욕구와 공공의 안전보장의 필요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開放矯導所 休暇濫用率 (단위 : %)

개방교도소 유형	남용율		그중 자의귀소자를 공제하면	
	1994	1993	1994	1993
1. 남자개방교도소	0.20	0.20	0.10	0.10
2. 여자개방교도소	0.30	0.10	0.20	0.00
3. 소년개방교도소	0.40	0.50	0.10	0.30
4. 소녀개방교도소	0.20	0.20	0.10	0.10
평 균	0.20	0.20	0.10	0.10

3. 無戒護 外部通勤

1993년도 무계호 외부통근을 허가받은 수형자는 전년도에 비하여 다시 약간 감소하였으나 1994년에는 다소 회복하였

다. 남용율은 해마다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年度別 無戒護 外部通勤實績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미 귀 자	남 용 율
1985	1,523	69	4.50
1986	1,313	29	2.20
1987	1,313	44	3.40
1988	1,360	48	3.50
1989	1,384	62	4.50
1990	1,396	38	2.70
1991	1,307	63	4.80
1992	1,207	62	5.10
1993	1,169	72	6.20
1994	1,223	37	3.00

4. 外出

외출에서의 남용율도 별다른 변화 없이 1994년도의 경우 0.3%를 기록하였고, 자의로 귀소한 경우를 공제하면 1994년도의 남용율은 0.2%로 더욱 줄어든다.

年度別 外出實績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미귀자	자의귀소자	남용율	자의귀소자를 공제한 남용율
1985	17,131	265	102	1.60	1.00
1986	44,668	265	102	0.60	0.40
1987	49,160	252	79	0.50	0.40
1988	48,796	210	72	0.40	0.20
1989	51,089	238	84	0.50	0.30
1990	50,270	246	80	0.50	0.30
1991	54,424	206	84	0.40	0.20
1992	52,672	214	70	0.40	0.30
1993	57,433	193	69	0.30	0.20
1994	70,100	224	81	0.30	0.20

Ⅸ. 學科 및 職業敎育

1. 槪說

직업 및 학과교육의 흠결을 보충해주는 것이 처우행형의 핵심내용이다. 범죄인으로 발진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교육결핍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빈번히 장애요소가 된다. 재소자들 중에는 특수학교학생, 학교중퇴자, 보조 내지 일용노동자 등이 평균 이상으로 많다.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약 40%의 재소자는 학교졸업을 못했고, 약 60%는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헷센주의 교도소와 관련지어 보면 이는 현재 미결구금자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약 3,400명의 수형자중에서 약 2,100명이 직업교육, 재교육, 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중 약 1/3에게만 직업교육을 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현재 약 700명). 그럴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짧은 수형기간, 장기수형자라도 자발적인 교육참여 열의의 부족, 수형자의 교육이수능력의 현저한 결핍(특히 이러한 재소자가 점증하고 있다) 등을 열거할 수 있다.

2. 學科敎育프로그램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수업(der allgemeinbildende Unterricht)은 현재 공공학교에 적용되는 교육법규정과 연관지어 진행된다. 초등상급학교(Hauptschule) 및 실업학교

(Realschule) 졸업증서(Abschluβzeugnis) 획득을 위해서는 헷센주 교육부가 제정한 시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년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현저한 학습결함을 가진 재소자를 위한 수업이 제공된다. 룩켄베르크와 비스바덴의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양 시설의 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다. 교육결함을 보충하고 지식을 넓히려는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은 양 교도소의 학과 및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학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감도 가능하다. 장차는 프랑크푸르트 제3교도소의 소녀재소자들도 주간에 직업 및 학과교육참가를 위하여 소년교도소를 방문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특수교육분야(Sonderschulbereich)의 수업은 학생의 개인적인 결핍(문맹, 학습장애, 행동장애)과 행형계획(행형완화, 가석방)에 따라 정해진다. 개별 수형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현저한 교육결핍을 가지는 자를 위해서는 소그룹을 만들어 수업을 하거나 아예 개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많은 경우 자원봉사자단체의 귀중한 지원을 받으며, 이때 교원들의 사례비는 위임된다.

외국수형자에게는 어학능력을 기르고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과정(Fordrkurse)이 제공된다.

초등상급학교졸업과정(Hauptschulabschuβkurse)은 디브르크교도소, 카셀제1교도소(카셀제2교도소와 공동으로), 슈발룸슈타트교도소의 남자 성인수형자 그리고 룩켄베르크 및 비스바덴교도소의 남자 청소년수형자를 위하여 제공된다.

실업학교과정(Realschulkurse)은 슈발룸슈타트교도소(남자 성인수형자)와 비스바덴교도소(남자 청소년수형자)에서 시행된다. 그밖에도 관심 있는 재소자에게는 방송통신수업과정(Fernunterrichtskurse) (예컨대 초등상급학교 및 실업학교졸업, 인문계고등학교졸업)에의 참가도 가능하다.

자유시간동안에 시행되었던 평생교육원과 '재소자교육기관 프리츠 바이어박사'(Gefangenenbildungswerk Dr. Fritz Bauer)에 의하여 실시된 재교육프로그램(Weiterbildungsmaβnahmen)은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원협회의 지도를 받아 "矯導所 成人敎育을 위한 州硏究會"(Landesarbeitsgemeinschaft Fur Erwachsenenbildung im Justizvollzug)에서 프리츠 바우어 재소자교육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였다. 동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교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가 논의되었고 교도소에 대한 재정자금이 배정되었다. 州硏究會는 成人敎育分野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헷센주 교도소에는 1995. 3. 1. 현재 모두 592명의 재소자가 학과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다.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각각의 참여지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個別矯導所別 學科敎育實績 (단위 : 명)

개별교도소	교육프로그램(1995. 3. 1)	참가자수
Butzbach	Hauptschullehrgang(초등상급학교교과과정)	8
	Forderlehrgang(지원교과과정)	10
	Forderunterricht(지원수업)	2
	Mathematik(수학)	5
	Englisch 1 u. 2(영어 1, 2)	35
	Spanisch(스페인어)	16
	Deutsch Fur Auslander 1 u. 2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1, 2)	17
	Maschinenschreiben(타자)	10
Darmstadt	Förderlehrgang(지원교과과정)	15
	Förderunterricht(지원수업)	7
	Deutsch fur Ausländer(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30
	Volkhochschulkurse(평생교육원과정)	35
Dieburg	Hauptschullehrgang(초등상급학교교과과정)	12
	Fernkurs Realschulabschluß (방송통신실업학교졸업과정)	1
	Alphabetisierungskurs (문맹을 면하기 위한 초급독일어과정)	2
	Deutsch fur Ausländer(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20
Frankfurt Ⅰ	Alphabetisierungskurs (문맹을 면하기 위한 초급독일어과정)	80
	Deutsch fur Ausländer(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90
Frankfurt Ⅱ	Deutsch fur Ausländer(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42
Frankfurt Ⅲ	Fernkurse(방송통신과정)	2
	Deutsch fur Ausländer 1 u. 2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1, 2)	33
	Englisch(영어)	17
	Maschinenschreiben(타자)	11
	Alphabetisierungskurse (문맹을 면하기 위한 초급독일어 과정)	4
Kassel Ⅰ	Forderunterricht(지원수업)	7

개별교도소	교육프로그램(1995. 3. 1)	참가자수
Rockenberg	Hauptschullehrgang(초등상급학교교과과정)	10
	Förderunterricht(지원수업)	12
Schwalmstadt	Hauptschullehrgang(초등상급학교교과과정)	12
	Realschullehrgang(실업학교교과과정)	7
	Fernkurse(방송통신과정)	3
Wiesbaden	Hauptschullehrgang(초등상급학교교과과정)	14
	Realschullehrgang(실업학교교과과정)	13
	Förderlehrgang(지원교과과정)	10
계		592

1989년에서 1995년까지 헷센주 교도소에서는 모두 375명이 학교 졸업과정을 이수하였다.

個別矯導所別 學科卒業實績(1995. 3. 1) (단위 : 명)

개별교도소	학교졸업
Butzbach	31
Dieburg	30
Frankfurt Ⅲ	7
Kassel Ⅰ	53
Rockenberg	60
Schwalmstadt	39
Wiesbaden	155
계	375

3. 職業敎育프로그램

직업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받지 않은 보조노동력"(ungelernte Hilfskräfte)이라는 직업군에 속하는 수형자가 고려된다. 이미 직업교육을 수료한 수형자를 위해서는 반대로 직업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그

들이 가진 직업적인 지식을 유지, 적용, 보충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에는 생산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오늘날 헷센주교도소에서는 직업교육, 학과교육, 교도작업이 모두 균형있게 강조된다. 과거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전개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히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사회재적응을 위한 본질적 기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물론 많은 수형자들은 통상인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수준에 못미치는 학과 및 직업교육상의 결핍을 안고 교도소로 들어온다. 그들이 석방후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동기부여, 사회훈련 그리고 양질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수년동안에는 노동부 헷센주사무소, 공법상의 직능단체 그리고 민간의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강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롭고 현대적인 직종전환 교육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직업적인 전일의 장기간교육에 집중하고 교정시설운영상 침체되거나 경시된 직업교육여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직종전환교육을 위하여 중앙공작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 노동부 헷센주사무소와의 협약에 의한 직종전환교육에 있어서 직업훈련교육장의 검증된 교육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 단기수형자를 위하여는 지원 및 보조과정, 일자리찾기 내지 취업지향적인 교과과정 그리고 쓰기, 읽기, 계산능력을 기르는 취업준비과정 등을 통하여 지원프로그램에

집중한다.

- 사회훈련 및 사회교육적 동반프로그램, 유감스럽게도 노동지원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 제41a조(노동시장을 위한 개선)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동법의 개정 그리고 동 제41a조의 삭제로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 재소자의 심리적 정신의학적 사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교도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노동치료적 또는 노동교육적인 작업장을 단계적 계속적으로 설치한다.
- 여자교도소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소년교도소의 기본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개설한다(노동지원법 제40조에 따른 취업준비).

헷센주 교도소에서는 1995. 3. 1. 현재 모두 421명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었다. 개별적인 교육 내용과 참가자수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個別矯導所別 職業訓練現況(1995. 3. 1) (단위 : 명)

개별교도소	직업훈련프로그램	참가자수
Butzbach	Computerlehrgang(컴퓨터교육)	10
	Schweißerlehrgang(용접교육)	12
Darmstadt	Druckerausbildung(인쇄공훈련)	5
	Schriftestzerausbildung(식자공훈련)	10
	Buchbinderausbildung(제본공훈련)	3
	Tischlerausbildung(목공훈련)	12
	Übungswerkstatt Druck und Satz (인쇄 및 조판 연습장)	1
	Übungswerkstatt Holz(목제공연습장)	2
Dieburg	Übungswerkstatt Metall(금속공연습장)	15

개별교도소	교육프로그램(1995. 3. 1)	참가자수
Frankfurt Ⅱ	Ausbildung Köchin und Gaststättengehilfin (여자요리사 및 식당여종업원 훈련) Grundausbildung Bürotechnik (사무기술 기초훈련) Grundausbildung Teztilreinigung(세탁기초훈련) Zertifikatskurs "Schneidern Fur ausl. Frauen" (외국인여성을 위한 재단사 자격증과정)	14 10 10 4
Kassel Ⅰ	Bäckerausbildung(제빵공훈련)	6
Kassel Ⅱ	Metallausbildung(금속공훈련) Schweißerausbildung(용접공훈련) Elektroausbildung(전기공훈련) Malerausbildung(도색공훈련) Lagerfachkraft(창고관리) Übungswerkstatt Holz(목제공연습장)	32 16 14 16 20 7
Rockenberg	Bäckerausbildung(제빵공훈련) Kochausbildung(요리사훈련) Schlosserausbildung(철물공훈련) Metallausbildung(금속공훈련) Elektroausbildung(전기공훈련) Malerausbildung(도색공훈련) Maurerausbildung(미장공훈련) KFZ-Ausbildung(차량정비공훈련) EDV-Ausbildung(전산정보처리공훈련)	9 6 12 28 2 8 5 5 6
Schwalmstadt	Kochausbildung(요리사훈련) Metallausbildung(금속공훈련) Karosserieausbildung(車體製造工訓練) Zimmererausbildung(목공훈련) Übungswerkstatt Metall(금속공연습장)	15 5 5 15 5
Wiesbaden	Bäckerausbildung(제빵공훈련) Metzgerausbildung(도축정육사훈련) Schlosserausbildung(철물공훈련) Grundausbildung Metall(금속공 기초훈련) Metallausbildung(금속공훈련) Schreinerausbildung(목공훈련) Übungswerkstatt Holz(목제공연습장) Malerausbildung(도색공훈련)	8 4 10 14 14 8 10 8
계		421

프랑크푸르트 제1교도소, 프랑크푸르트 제2구치소, 프랑크푸르트 제4교도소(개방시설), 풀다, 림부르크 그리고 청소년 구금시설에서는 아무런 직업훈련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위 표에는 노동치료과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언급되지 않았다. 1989년에서 1995년까지 헷센주 교도소에서는 1,148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였다.

個別矯導所別 職業訓練修了實績(1995. 3. 1) (단위 : 명)

개별교도소	직업훈련수료자
Butzbach	239
Darmstadt	123
Frankfurt Ⅲ	168
Kassel Ⅰ	72
Kassel Ⅱ	350
Rockenberg	70
Schwalmstadt	74
Wiesbaden	52
계	1,148

(다음 9월호에 계속)

19740216

獨逸 헷센州의 矯正制度(3)

교정2권
(1997.9

金 丙 柱
(京畿大 講師, 法學博士)

〈目 次〉

Ⅰ. 머릿말
Ⅱ. 矯正處遇에 대한 法的根據
Ⅲ. 矯正施設
Ⅳ. 矯正人力
Ⅴ. 矯正費用
Ⅵ. 收容現況
Ⅶ. 開放處遇
Ⅷ. 矯正緩和 및 休暇制度
Ⅸ. 學科 및 職業敎育
Ⅹ. 矯導作業
Ⅺ. 特殊處遇
Ⅻ. 自由時間, 體育, 文化活動

編譯者 註) 이 글은 1995년 헷센주 법무성이 헷센주 교정의 대강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소책자형태로 발간한 "Justizvollzug in Hessen - Informationen und Zahlen, 1995"의 내용중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독일은 국가형태가 연방공화국으로서 교정업무는 주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교정의 근거법규로는 연방법인 행형법(Gesetz un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esntziehenden Ma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Strafvollzugsgesetz, StVollzG, 1976)이 있지만, 그 집행은 각 주마다의

X. 矯導作業

1. 概況

교도작업의 실체법적 측면은 일의적인 연방법 차원에서는 행형법 제37조 내지 제47조 그리고 행형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행형보수규정(Strafvollzugsvergutungsordnung)에 따라 규율된다. 교도작업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 州의 각각의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에 규정되어 있다.

1977년의 행형법 시행과 더불어, 이 법이 그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듯이, 처우지향적 교정의 구현을 위하여 교도작업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조개편작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및 교과교육은 따라서 중요한 사회화수단으로서 재소자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교도작업의 선택과 배분 및 교육의 본질도 노동시장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미래지향적이여야 하고 석방후의 출소자의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4가지 활동유형이 이와 같은 목표달성에 기여한다(행형법 제37조).

- 재소자의 능력, 숙련도, 소질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

고유한 특성과 법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정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탐구를 위해서는 연방법인 행형법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 실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6개에 달하는 주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독일 교정실무를 개관하는 작업의 첫번째 시도로서 여기서는 헷센주의것을 소개한다. 그동안 우리 교정계는 이론 및 실무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모델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우리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제3의 대안으로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 효과가 기대되는 작업

- 적격인 재소자에게는 직업교육, 직업재교육, 직종전환교육 또는 기타의 다른 교육 및 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노동능력이 있는 재소자에게 경제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작업에 배당되지 않거나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명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재소자에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치료적(arbeitstherapeutisch)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다.

교정의 특별한 과제로서 교도작업/재소자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생활에 편입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을 갖추어 나가고, 이를 통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소자에게 그의 능력과 숙련도 그리고 소질에 상응한 그리하여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교도작업은 가능한 한 그것이 수형자의 석방후 성실한 방법으로 그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수형자처우를 위한 최저원칙 제71호 제4항의 규정과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것은 교도작업이

-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 우선적으로 취업의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그리하여 그로부터 소내질서유지의 요소를 도출하는데 기해서는 안된